

제277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
제1차 회의 2021. 3. 22.(월)

남양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
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자치행정위원회

남양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

1. 제안경과

본 조례안은 2021년 3월 10일 김영실 의원 등 열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3월 11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.

2. 제안이유

법률의 내용과 다르게 규정된 우리 시 조례를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업무 혼란을 방지하고, 조례의 조문을 한글 어문규범에 맞도록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여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조문번호 정비(안 제1조)
- 나. 위원회 구성의 세부규정을 정비하여 위원회 구성 기준 완화(안 제3조)
- 다. “위원의 임기”를 “위촉직 위원 임기”로 대상범위 명확화(안 제4조)
- 라. 그 밖에 법령 정비규정에 따른 용어 정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불임1
- 나. 예산조치 : 불임2 (비용참조)
- 다. 관련부서 : 장애인복지과
- 라. 입법예고 : 2021. 3. 11. ~ 3. 17.(5일간) / 의견없음.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직과 운영에 필요사항을 규정한 조례의 미비점을 개정하고 현행 자치법규 입안 메뉴얼에 따라 알기 쉬운 용어와 순화어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.

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바와 같이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.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- 「남양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제9조(수당 등)에 따라 참석위원에게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.
- 연간 위원회 개최 2회 내외, 위원회 구성 인원 최대 30명으로 1억 미만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 제2항 제1호에 해당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3억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임

4. 작성자

복지국 장애인복지과장 정 순 영

☑ 장애인복지법

제13조(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) ①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·조사·실시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둔다.

② 제1항의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조직·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☑ 장애인복지법 시행령

제12조(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) ① 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(이하 “지방위원회”라 한다)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자로 하되,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.

1.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
2.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3.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